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김재중 의원의 6인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충청북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건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 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 분양아파트와 모델하우스의 시공상태 차이로 인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 완벽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아파트 품질보장을 통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3조제4항의 업무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업무처리부서인 건축디자인과 현재인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기타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됨.